

		보도해명자료	
		배포일시	2018. 8. 13.(월) / 총 4매(본문2, 참고2)
담당 부서	민자철도팀	담당자	•팀장 김태형, 사무관 염광은 •☎ (044) 201-3983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“국토부, 신안산선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 결격사유 알고도 숨겼다” 보도 관련

-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'17.12.12일 고시된 “신안산선 복선 전철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(변경)(이하 'RFP')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, 결격사유를 알고도 숨겼다는 관련기사(경향, '18.8.13)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.
- RFP에서 재무적 투자자(금융기관, 연기금 등)는 대표자에 한하여 무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토록 하였고,
 - * 대표자 : 사업시행자 컨소시엄 중 본 사업에 대한 지분율이 14.5% 이상인 자로서 향후 협상 및 사업시행 등을 주관하는 출자자를 지정토록 함
 - 포스코 컨소시엄((가칭) 넥스트레인(주))은 대표사인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건설사들은 무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하고, 재무적 투자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*를 제출하여, RFP 상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.
 - * 조건: ①실시협약 체결 후 사업시행자로 지정, ②금융기관 내부 투자심사 승인
 - * 집합투자기구(펀드)는 재무적 투자자로 분류한다고 규정
 - 이는 사업제안서 제출 시점에 금융기관이 내부 투자심사를 득하여 무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서, 본 사업 뿐 아니라 다른 민자사업에서도 재무적 투자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 제출을 허용하여 온 것입니다.

○ 다만, 본 사업은 작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컨소시엄이 적법한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협상대상자 자격이 취소됨에 따라, 대표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대표자에 한해서만 재무적 투자자도 무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.

□ 본 사업은 지난 1.26일 사업계획서 접수 결과 2개 컨소시엄(포스코 컨소시엄, 농협생명 컨소시엄)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,

* 포스코컨소시엄(가칭, 넥스트레인(주)), 농협생명 컨소시엄(가칭, 신안산선(주))

○ 평가 주관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하에 양 컨소시엄 참여 하에 평가위원회를 선정·구성하여, 1.30일 1차 사업수행능력평가(PQ평가)를 시행하였고, (가칭)신안산선(주)는 제출서류 및 사업수행능력에서 일부 불충족 판정을 받아 부적격 판정*을 받았고, (가칭)넥스트레인(주)는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.

* 가칭 신안산선(주) 부적격 사유

- ①제출서류 중 법인인감증명서 및 출자자 주주현황이 고시일 이전 발행,
- ②재무능력 중 자기자본 조달능력 확인을 위한 추가투자확약서 내용 부족
- ③설계능력 미충족(실시설계용역수행실적이 충족되지 않음)

○ 이후 탈락한 (가칭)신안산선(주) 측 일부 출자자(한양산업개발 등 출자지분 0.6%)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. (집행정지 기각 확정, 본안소송 1심 진행 중)

< 보도내용 (2. 13, 경향신문) >

◆ 국토부, '신안산선'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결격사유 알고도 숨겼다

- 우선협상자 선정 때 '무조건부 투자확약서' 받아야 하지만 '조건부 투자확약서' 받아... 자격 취소 않고 국회에 허위보고



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영광은 사무관(☎ 044-201-398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사업신청 및 사업시행조건 14p >

(2) 사업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.

- ③ 사업신청자는 출자자 중 본 사업에 대한 지분율이 14.5% 이상인 자로서 [첨부2. 사업계획서 평가계획] (3) 출자자의 재무능력(F) ①의 ㉠과 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인을 향후 협상 및 사업시행 등을 주관하는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함. 또한 대표자는 민간투자비 중 자본금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(조건부 투자확약서 불인정).

< 사업신청 및 사업시행조건 17p >

3. 사업신청방법

사업신청자는 「민간투자법」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본 시설 사업기본계획에서 명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의향서, ~~확약서~~ 등은 주무관청 앞으로 제출하여야 함.

- (1)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법인설립계획서
- (2) 출자 등 자체자금 투자(추가출자 및 후순위주주차입금 포함)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(기 설립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투자확약서). 다만, 출자자가 재무적 투자자(금융기관, 연기금 등)인 경우 조건부 투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(재무적 투자자가 대표사인 경우는 제외)하며,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실시협약 체결시까지 조건없는 투자확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.

< 사업계획서 평가계획 15p-16p >

- ㉔ ②의 ㉑에서 설립예정인 공모인프라펀드의 경우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(사모인프라펀드의 경우 수익증권 매입확약서)로 대신할 수 있으며, 금융기관이 발행한 출자자의 조달금액 이상의 대출확약서 제출도 가능함(설립된 인프라펀드 포함).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2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(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)로서 약관 또는 정관에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재산의 90%이상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로 운용하기로 정한 집합투자기구는 재무적 투자자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함.
 -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된 경우, 투자회사는 법인 명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투자신탁은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(예시:△△투자신탁,○○은행(신탁업자) 또는 ××운용(운용기관)). 단, 집합투자업자 명의로 제출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0일 이내 수탁회사 명의로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.
 -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,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확약서(또는 수익증권 매입확약서) 및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공동출자확약서를 제출하며, 공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「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증권회사의 총액인수확약서 및 설립/설정 실패시에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직접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.
 -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, 설립예정인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평가방법은 일반출자자 평가방법을 준용함.